

전담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5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의 성명	전화번호
	주소(소재지)	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0조의5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 조직 운영 현황 2. 업무 수행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2. 국가기술자격증(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